

중국의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정보신청기관 : 대한적십자사

I. 서론

중국의 법규정에 의하면 적십자사 등 사회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관하여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기부자의 세제 혜택에 관한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이하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이하 “개인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이하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이하 “공익사업기부법”)” 등에 산재되어 있다. 이외에도 각 관련 법률·법규 및 정책성문건에 공익성 기부에 관한 세제혜택 및 기타 지원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다음에서는 개인과 기업 두 가지 유형의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개인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

1.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된 세제 혜택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이 교육 및 기타 공익사업에 소득의 일부를 기부한 경우,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개인이 교육 및 기타 공익사업에 소득의 일부를 기부한다”는 것은 개인이 그 소득을 중국 국내의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하여 교육 및 기타 사회공익사업과 특대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 빈곤낙후지역에 기부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기부금액은 과세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24조). 다시 말하면 실제 기부금액이 기부한도보다 많을 때, 기부한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으며 실제 기부금액이 기부한도보다 적거나 기부한도와 동일할 경

우, 실제 기부금액을 공제한다.

2. 규범성 문건(規範性文件)

(1) 30% 한도에서 공제하는 규정

①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가 광화과학기술기금회를 통하여 공익·구제성 기부를 한 경우, 세전공제문제에 관한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纳税人通过光华科技基金会的公益、救济性捐赠税前扣除问题的通知) 國稅函[2001] 164호

납세자가 광화과학기술기금회(光华科技基金会)를 통하여 교육, 민정부서 및 자연재해피해지역, 빈곤지역에 기부한 경우 개인은 과세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가 중국인구복지기금회에 기부한 경우, 세전공제문제에 관한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纳税人向中国人口福利基金会捐赠税前扣除问题的通知) 國稅發[2001] 214호

납세자가 중국인구복지기금회(中国人口福利基金会)에 대하여 공익·구제성 기부를 한 경우, 개인은 과세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가 중국광채사업촉진회를 통하여 공익·구제성 기부를 한 경우, 세전공제문제에 관한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纳税人通过中国光彩事业促进会的公益救济性捐赠税前扣除问题的通知) 國

稅函[2003] 78호

납세자가 중국광채사업촉진회(中国光彩事业促进会)를 통하여 공익·구제성 기부를 한 경우, 납세자는 과세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중국금융교육발전기금회 등 10개 단체에 공익성 기부를 한 경우, 세전공제문제에 관한 통지(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中国金融教育发展基金会等10家单位公益救济性捐赠所得税税前扣除问题的通知) 財稅[2006] 73호

개인이 중국금융교육발전기금회(中国金融教育发展基金会), 중국국제민간조직합작추진회(中国国际民间组织合作促进会), 중국사회사업협회장애아동구조기금관리위원회(中国社会工作协会孤残儿童救助基金管理委员会), 중국발전연구기금회(中国发展研究基金会), 진가경과학상기금회(陈嘉庚科学奖基金会), 중국우호평화발전기금회(中国友好和平发展基金会), 중화문학기금회(中华文学基金会), 중화농업과학교육기금회(中华农业科教基金会), 중국소년아동문화예술기금회(中国少年儿童文化艺术基金会)와 중국공안열사기금회(中国公安英烈基金会)에 기부할 경우, 과세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중국화교경제문화기금회 등 4개 단체에 공익성 기부를 한 경우, 세전공제에 관한 통지(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中国华侨经济文化基金会等

4家单位公益救济性捐赠所得税税前扣除问题的通知) 财税[2006] 164호

개인이 중국화교경제문화기금회(中国华侨经济文化基金会), 중국소수민족문화예술기금회(中国少数民族文化艺术基金会), 중국문화보호기금회(中国文物保护基金会)와 북경대학교육기금회(北京大学教育基金会)를 통하여 공익·구제성 기부를 한 경우, 과세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기술혁신기금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정책문제에 관한 통지(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纳税人向科技型中小企业技术创新基金捐赠有关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06] 171호

개인이 공익성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하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기술혁신기금관리센터(科技部科技型中小企业技术创新基金管理中心)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기술혁신기금을 기부할 경우, 과세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⑦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중국청소년사회교육기금회 등 16개 단체에 공익·구제성 기부를 한 경우, 세전공제에 관한 통지(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中国青少年社会教育基金会等16家单位公益救济性捐赠所得税税前扣除问题的通知) 财税[2007] 112호

2007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중국 청소년사회교육기금회(中国青少年社会教育基金会),

중국직원발전기금회(中国职工发展基金会), 중국 서부인재개발기금회(中国西部人才开发基金会), 중원자선기금회(中远慈善基金会), 장학량기금회(张学良基金会), 주배원기금회(周培源基金会), 중국공자기금회(中国孔子基金会), 중화사원공정빈곤구제기금회(中华思源工程扶贫基金会), 중국교향악단기금회(中国交响乐发展基金会), 중국간염방치기금회(中国肝炎防治基金会), 중국영화기금회(中国电影基金会), 중화환경보호연합회(中华环保联合会), 중국사회사업협회(中国社会工作协会), 중국나병예방협회(中国麻风防治协会), 중국빈곤구제개발협회(中国扶贫开发协会)와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회(中国国际战略研究基金会) 등 16개 조직을 통하여 공익·구제성 기부를 한 경우, 과세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전액공제에 관한 규정

① 재정부·국가세무총국에서 청소년활동장소, PC게임방의 소득세와 영업세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对青少年活动场所, 电子游戏厅有关所得税和营业税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00] 21호

개인이 비영리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하여 공익성 청소년 활동장소(신축 포함)에 기부한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기업 등 사회단체가 적십자사업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정책문제에 관한 통지(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

于企业等社会力量向红十字事业捐赠有关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00] 30호
 개인이 비영리사회단체와 국가기관(적십자사를 포함)을 통하여 적십자사업에 기부한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노인서비스기구의 세수정책문제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对老年服务机构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00] 97호
 개인이 비영리사회단체와 정부부서를 통하여 복지·비영리성 노인서비스기구에 기부한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재정부·국가세무총국에서 기업 등 사회단체가 적십자사업에 기부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等社会力量向红十字事业捐赠有关问题的通知) 财税[2001] 28호
 현금 이상(현금 포함) 적십자사의 관리체제 및 사무기관, 편제가 동급의 편제 주관부서의 심사를 통과하고 동급 정부의 인솔을 받는 적십자사는 완전 수증자, 재 기부자 자격이 있는 적십자사이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적십자사 및 “적십자사업”에 기부한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모 부서에서 대리관리하거나 모 부서에 부속된 현금 이상(현금 포함) 적십자사는 한 정적 수증자, 재기부자 자격이 있는 적십자사이다. 이러한 적십자사 및 그 “적십자사업”은 중국 적십자사 총회의 주도하에 열리는 중대행사

(총회의 통지를 기준으로)시 받은 기부나 재기부의 경우에만, 기부자는 기부금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특정된 기부나 재기부를 받을 경우, 중국 적십자총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부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가 농촌의 무교육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纳税人向农村义务教育捐赠有关所得税政策的通知) 财税[2001] 103호
 개인이 비영리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하여 농촌의무교육에 기부한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교육세수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教育税收政策的通知) 财税[2003] 204호
 개인이 중화건강익스프레스기금회(中华健康快车基金会), 손치방경제과학기금회(孙冶方经济科学基金会), 중화자선총회(中华慈善总会), 중국법률지원기금회(中国法律援助基金会)와 중화정의행동기금회(中华见义勇为基金会)에 기부한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⑦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교육세수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教育税收政策的通知) 财税[2004] 39호
 납세자가 중국 국내의 비영리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하여 교육사업에 기부한 경우, 그 전

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⑧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송경령기금회 등 6개 단체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向宋庆龄基金会等6家单位捐赠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04] 172호

개인이 송경령기금회(宋庆龄基金会), 중국복지회(中国福利会), 중국장애인복지기금회(中国残疾人福利基金会), 중국빈곤구제기금회(中国扶贫基金会), 중국탄광진폐병치료기금회(中国煤矿尘肺病治疗基金会), 중화환경보보기금회(中华环境保护基金会)를 통하여 공익·구제성 기부를 한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⑨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중국노령화사업발전기금회 등 8개 단체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中国老龄事业发展基金会等8家单位捐赠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06] 66호

개인이 중국노령화사업발전기금회(中国老龄事业发展基金会), 중국화문교육기금회(中国华文教育基金会), 중국녹화기금회(中国绿化基金会), 중국부녀발전기금회(国妇女发展基金会), 중국생물다양성보호기금회(中国生物多样性保护基金会), 중국유아청소년기금회(中国儿童少年基金会)와 중국광채사업기금회(中国光彩事业基金会)를 통하여 공익·구제성 기부를 한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⑩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중국의약위생사업발전기금회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中国医药卫生事业发展基金会捐赠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06] 67호

개인이 중국의약위생사업발전기금회(中国医药卫生事业发展基金会)를 통하여 공익·구제성 기부를 할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⑪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중국교육발전기금회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中国教育发展基金会捐赠所得税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06] 68호

개인이 중국교육발전기금회를 통하여 공익·구제성 기부를 한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⑫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현금 이상 노조총회에 기부한 경우, 소득세공제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县级以上总工会捐赠所得税税前扣除政策问题的通知) 财税[2007] 155호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전국 현금 이상 노조총회(각급 동업성 노조와 여러 유형의 기업노조는 포함되지 않는다)를 통하여 저소득층직원도움센터에 공익·구제성 기부를 한 경우, 그 전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의 여러 규범성 문건을 해석하면 기부의 대

상, 즉 수증자는 교육과 기타 사회공익사업 및 특대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 빈곤지역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부는 모두 중국 국내의 사회단체 및 국가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직접 수증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부할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에 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Ⅲ. 기업의 기부에 대한 혜택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시행조례가 공포됨으로써 중국의 공익성 기부에 관한 소득공제 정책이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업소득세법”에서는 공익성 기부와 관련한 조세혜택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 소득공제 기준

“기업소득세법” 제9조에 의하면 기업의 공익성 기부금은 연도이윤총액의 12% 한도 내에서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여기서 “연도이윤총액”은 기업이 국가의 회계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도 회계이윤이다. “공익성 기부”란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 또는 현금 이상의 인민 정부 및 그 부서를 통하여 “공익사업기부법”에서 규정

한 공익사업에¹⁾ 대한 기부이다(“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51조). 공익성 사회단체는 다음의 여러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금회, 자선단체 등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즉, 단체로 등록을 하여 법인자격을 갖추고 공익사업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그 취지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단체의 자산은 모두 법인의 소유이며, 단체의 수익 및 그 운영경비 등의 사용은 모두 법인설립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법인이 해산된 후, 잉여자산은 기타 개인이나 영리단체에 귀속되지 않는다. 사회단체는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完비한 재무회계제도를 구비해야 한다. 기부자는 어떠한 형태로도 사회단체재산의 배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 외 국무원 제정, 세무주관부서와 국무원 민정부서 등 등록관리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52조).

2. 기부자산의 가치확정

증여받은 기부금은 실제 수령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기타 기부물품은 그 공인된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 공인된 가격에는 기부자가 제시한 기부물품의 시장가격 외에도 기부자가 기부 과정에서 실제로 부담한 관세, 예컨대 부가가치세, 도시건설세,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가



1) “공익사업기부법”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사업은 아래와 같은 부분의 비영리성 사업을 가리킨다. ① 재해구제, 빈곤구제 및 장애인 등 어려움에 처한 사회단체와 개인을 돕는 활동, ②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사업, ③ 환경보호, 사회공공시설건설, ④ 사회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기타 사회공익사업과 복지사업.

산해야 한다.

기부자가 물품을 기부할 경우, 물품의 공인된 가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기부자는 수증자가 승인하는 중개기구(예컨대, 회계사사무소 등)가 발급한 감정보고서 또는 감정증명을 제공하여 공인된 가격의 진실성을 증명해야 한다.

3. 특수한 경우의 소득공제

“기업소득세법” 및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가 공포됨으로써, 기업의 공익성 기부에 관한 소득공제기준이 통일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행사·특대재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의 공익성 기부에 관한 특별규정을 공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업의 공익성 기부는 기업소득세법 해당 규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예컨대 북경올림픽, 상해 엑스포, 문천(汶川) 대지진과 옥수(玉樹)지진 등의 경우에 정부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공포한 적이 있다.

첫째,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집행 중 세무처리문제에 관한 통지(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所得税执行中若干税务处理问题的通知)”에 의하면 기업에서 문천지진 재건사업과 북경올림픽 및 상해 엑스포 등 특정된 행사에 기부할 경우, “재정부·관세청·국가세무총국의 문천지진재건 중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汶川地震灾后恢复重建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 “재정부·국

가세무총국·관세청의 제29회 올림픽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海关总署关于29届奥运会税收政策问题的通知)”,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国家税务总局关于2010年上海世博会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 등 규정에 의하여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재정부·관세청·국가세무총국의 옥수지진재건 중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支持玉树地震灾后恢复重建有关税收政策问题的通知)”의 규정에 의하면 “2010년 4월 14일부터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 현금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를 통하여 재해지역에 기부할 경우, 당해 연도에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윤총액의 12% 내에서 공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외에 기업이 적자상태일지라도 위의 4가지 공익성 기부금액은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적자는 장래연도에 이월하여 보충할 수 있다. 단 이월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업에서 북경올림픽, 상해 엑스포, 문천(汶川)대지진과 옥수(玉樹)지진 등에 대한 공익성 기부를 할 경우, 전액공제를 받았으며 12%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4. 비영리단체의 수입

“기업소득세법” 제26조에 의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단체의 수입은 과세면제 대상이

다”. 공익성 기금회는 비영리공익단체이며 그 수입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결국, 비영리공익단체는 면세대상에 속하며, 기부금액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5. 실제 사례²⁾

현재 중국기업에서 재해지역에 대한 기부는 아래와 같은 6가지 형태가 주된 형태이다.

첫째, 가장 보편적인 경우가 현금기부이다. 이 경우, 12%의 비율로 소득공제를 한다.

둘째, 기업의 현금기부와 개인현금기부가 결합된 형태이다. 소녕전기(蘇寧電器)의 경우가 그 예이다. 이 회사는 회사 명의로 500만 원을 기부하였고, 또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5,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이 경우, 회사 명의로 기부한 금액에 관해서는 회계이윤의 12%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하지만 개인 명의로 된 기부는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이 지진재해지역에 기부한 경우의 개인소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통지(关于个人向地震灾区捐赠有关个人所得税征管问题的通知)”에 따라 개인이 직접 정부기관·비영리단체를 통하여 재해지역에 기부한 경우,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 별도의 부담을 주지 않는다.

셋째, 기업현금기부와 실물기부가 결합된 형태이다. 맥도날드가 전형적인 예이다. 맥도날드

회사는 2,200만 원의 현금을 재해지역복원사업에 기부한 외에 또 4만 인분의 음식을 재해지역에 배송하였다.

넷째, 실물기부의 형태이다. 가령, 위의 첫째 경우에 200만 원어치의 실물을 기부하였다면 이 기부한 실물의 가격을 판매가격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소득세과세에서 기부지출의 공제금액은 회계이윤의 12%의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섯째, 기업실물기부와 개인기부가 결합된 형태이다. 실물기부는 매매행위로 간주하여 거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기부는 기부증서가 있어야 전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공익기금회에 기부하는 형태이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기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회를 설립할 수 있다. 공익기금회는 비영리공익단체이고, 그 수익에 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지출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IV. 정부의 적십자사에 대한 기타 지원

“중국적십자사 모금과 수증사업에 관한 조례(中国红十字会募捐和接受捐赠工作条例)” 제13조에서는 “기부물자를 운송함에 있어서 적십자사의 직원 및 구조물자와 교통운송도구는 적십



2) 孙自愿, 黄元元, 朱学义, “企业公益性捐赠的纳税筹划”, 企业管理, 2008年12期, 77-78页.

자사법에 의하여 우선통행의 권리가 있다. 현지 지방정부는 기부물자를 이송할 때 발생하는 운송·도로·보관 등 비용을 면제해야 한다. 필요 시 현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법(中华人民共和国红十字会法) 제5조에 의하면 “인민정부는 적십자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며, 적십자사 그 직책의 이행을 보장하며, 적십자사의 활동에 대하여 감독한다. 적십자사는 인민정부를 협조하여 그 직책에 관련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적십자사의 경비에 관하여 동법 제20조 제4항은 “인민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한다”고 규정하였고,³⁾ 동법 제21조는 “국가는 적십자사가 그 취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사업단체의 설립을 지원한다”고 규정하였다.

V. 결론

현재 중국은 개인 및 법인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적십자사에 대한 세제혜택 및 여러 지원에 관하여 점차 법률적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에 개정·공포된 “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시행조례, “공익성 기부법”, “적십자사법” 등의 여러 법률에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여러 단체 및 다수의 학자들은 일명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이라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마 머지않은 장래에 공익성 기부를 위한 세제 혜택 및 기타 재정지원에 관하여 시대수요에 부합되는 법률이 제정·공포될 것이다.

이 선 화

(해외입법조사위원, 중국 길림대학교 박사)



3) 예컨대, 중국 무주시(抚州市)정부에서는 적십자사를 위하여 380m²의 사업장을 마련하였고, 500여m²의 물품창고를 비치하였으며, 정부예산으로 필요한 사업설비 등을 마련하였다 (<http://www.jxredcross.org.cn/chs/new/dsdt/201103/20110312213148.html> 2011년 6월 30일).